

연구 자료

방콕협정의 농산물 무역전환효과와 협상 대책

어 명 근*

Key words: 방콕협정(Bangkok Agreement), 양허요청 및 제공 방식(Request and Offer: R/O System), 무역전환효과(Trade Diversion Effect), 양국간 잠재교역액(Potential Bilateral Trade: PBT),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measure the impacts of agricultural product offer at the Third Round of Bangkok Agreement. Potential Bilateral Trade(PBT), which may be interpreted as a maximum level of trade diversion effect is estimated to US\$ 1.6 billion for 122 agricultural products that requested by China. This amount exceeded current agricultural import from China. The biggest PBT is US\$ 345 million for corn followed by US\$ 250 million for food preparations and US\$ 200 for tobacco.

These results seem to back up the strategy of excluding agricultural product from concession at the Third Round of Bangkok Agreement. Or it supports Korean position of re-negotiating the inclusion of agricultural products after settlement of WTO/DDA negotiation.

1. 머리말
2. 방콕협정의 경제 규모와 역내 교역
3. 방콕협정의 무역전환효과 측정
4. 맺음말: 방콕협정 제3라운드 협상 전략

1. 머리말

1976년 출범한 방콕협정은 칠레와의 자유 무역협정(FTA) 체결 이전까지 우리나라가

가입된 유일한 지역무역협정으로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개발도상국간 무역협정이었다. 방콕협정은 WTO에서 권능부여조항(Enabling Clause)이 적용되는特惠무역협정이지만 회원국간 양허품목이 적고特惠 폭이 낮아 역내 무역의

* 연구위원

확대라는 실질적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침체된 상태에 머물러 왔다. 그러나 2001년 5월 중국이 가입함으로써 세계 최대의 인구를 가진 지역무역협정으로 발돋움하게 되어 역내 양허 품목과 특혜 폭을 확대할 경우 역동적인 경제블럭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세계 경제의 조류는 1990년대 이후 새로운 지역협정의 출범이 가속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럽연합(EU),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동남아국가연합(ASEAN), 남미공동시장(MERCOSUR) 등 기존의 지역무역협정은 더욱 심화, 확산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지역주의 추세에 대응하고 아시아와 중국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만성적인 무역수지 흑자를 보이고 있는 방콕협정에서 양허 품목과 특혜 폭을 확대함으로써 역내 무역활성화를 주도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중국의 가입을 계기로 2001년 10월 시작된 제3라운드 협상은 제17차 및 18차 상임위원회에서 회원국 확대와 양허 품목 및 특혜 폭 확대, 협정문 개정 등 방콕협정 활성화를 위한 협상방식과 지침에 합의한 바 있다. 그에 따라 제19차와 20차 상임위원회에서 국별 양허요청서(Request List)를 제출하고 양허제공안(Offer List)을 교환,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중국의 가입으로 세계 최대의 인구를 가진 지역무역협정이 된 방콕협정의 제3라운드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역내 교역을 활성화하고 우리나라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부는 산업별로 생산자 단체

의 적극적인 참여하에 양허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1976년 방콕협정 출범 이후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농산물을 특혜관세 양허대상에서 제외한 상태에서 협상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대부분 저소득 개발도상국인 회원국들은 농산물에 대한 양허 확대를 요청하고 있어 우리나라가 농산물 제외원칙을 고수할 경우 협상 타결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방콕협정의 제3라운드에서는 농산물 부문의 양허 요청이 강화되고 있다. 중국은 한·중 수교 이후 매년 막대한 액수의 대한 무역수지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농산물 분야의 대폭적인 무역자유화를 요구하고 있다. 농산물 거대 시장인 중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한 우리나라 농업에 있어서 방콕협정 제3라운드는 중요한 도전이자 기회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인도와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등 농산물 개방 요구가 상대적으로 약했던 회원국들과의 협상에서는 대부분의 농산물을 양허하지 않고 예외 취급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중국의 가입을 계기로 방콕협정이 WTO/DDA나 FTA 못지않게 심각한 도전으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제3라운드 협상에서 국별 특혜관세 양허요청서 중 농산물에 대한 요구 내용을 사전에 철저하게 검토하고 농업부문에 미칠 파급효과를 예측하여 협상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방콕협정이 우리 경제와 국내 농업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여 제3라운드

협상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중국의 가입을 계기로 본격화하고 있는 농업분야에 대한 양허 요청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국내외 관련 연구를 검토하고 실증적 자료와 모형에 의한 계측 결과를 바탕으로 농업부문에 미치는 효과를 계측하고자 하였다. 또한 제3라운드 협상 진전에 따라 양허가 불가피할 경우에 대비하여 양허 우선순위 선정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방콕협정과 관련된 선행 연구에 의하면 중국시장 선점과 방콕협정내 개도국 시장에서의 우위 확보를 위해 협정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지만 우리나라의 양허제공안(Offer List)은 산업별 비용/편익 분석 없이 보호주의에 치중하여 장기적 산업 전략이 결여되었다고 지적이 있다(김대유, 2002). 아울러 방콕협정의 활성화를 위해 양허가능 품목을 발굴하고 양허 우선순위를 마련할 것과 회원국 확대 및 협정의 성격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동아시아 지역에서 FTA 논의가 부진한 것은 역내국들의 높은 대미의존도와 상호 경쟁적 산업구조, 고도성장의 유지, 그리고 정치체제상의 차이와 역사적 이유에 기인한다는 분석도 있다(김장한, 2002).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지역협력의 필요성이 증가하였지만 지역무역협정 추진 동기는 국별로 상이하다. 한국은 경제적 이익과 세계 지역주의 확산에 동참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데 비해 일본은

장기적인 경기침체에서 탈출하고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서, 그리고 중국은 동아시아 내에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각 FTA를 모색하고 있다. 동아시아 FTA 달성은 중국과 일본간 주도권 쟁탈 경쟁과 역내국간 경제적 격차, 그리고 농업문제 등으로 인해 결국 중장기적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국의 가입으로 방콕협정의 실효성이 증대된 것을 계기로 FTA 출범의 디딤돌 역할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과 일본시장에서 중국이 아세안의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하고 있다는 견해도 있다(박정동, 2002) 아세안과 중국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중국시장에서 아세안의 무역수지 흑자기조는 유지, 확대되는 추세이며 무역특화계수로 볼 때 노동집약적 제품은 중국이 압도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자원가공형 품목은 아세안이 우위를 지니지만 기계류는 상호 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찬현(2002)은 1975년 방콕협정 체결 당시 역내 수입비중이 1.04%에 불과하였으나 이후 제2라운드 협상을 거쳐 양허 품목과 특혜 폭 확대로 역내 교역 비중이 1998년 5.1%로 증가하였음을 보여준다. 또한 우리나라가 가입된 유일한 지역무역협정인 방콕협정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WTO 협정과 의 합치성을 강화하고 회원국 및 양허 폭을 확대하여 ASEAN을 능가하는 국제무역상 비중이 있는 대형 역내 시장을 선점하는 동시에 FTA의 전초적 단계로 활용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방콕협정의 거시경제적 및 산업별 영향 분석을 위한 CGE 모형 추정과 무역특화지수(TSI)를 계측한 연구도 있다(송희영 외, 2003). 이 연구에서는 세부 품목별 무역특화지수의 크기에 따라 비교우위의 강약을 부여함으로써 관세 양허 폭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즉, 비교우위가 매우 열악하여 완전수입특화에 가까운 경우($TSI \leq -0.5$) 산업보호의 실효가 없으므로 관세를 인하하고, 비교우위가 큰 완전 수출특화 품목의 경우($0.5 \leq TSI \leq 1$) 경쟁력이 높아서 관세를 인하해도 영향이 별로 없으므로 관세 인하를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비교우위가 중립적이거나 수출입 특화지수가 낮은 경우($-0.5 < TSI < 0.5$) 산업 보호를 위해 관세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Mukherji, I. N.(2003)는 아태지역 무역자유화를 위해 네거티브리스트 접근법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면서 방콕협정의 회원국간 잠재교역액(Potential Bilateral Trade: PBT) 규모를 품목별로 추정하였다. 양국간 공급국의 총수출액과 수입국의 총수입액, 그리고 현행 수입액 등을 고려하여 산출되는 양국간 잠재교역액(PBT) 규모는 한국과 중국간 교역에서 가장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인도는 중국과의 교역, 그리고 방글라데시와 스리랑카 등은 한국과의 교역 증대를 통해 잠재교역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은 방콕협정의 성격과 의미 및 국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역

내 회원국 및 아시아 국가들과의 교역에 관한 것으로 향후 방콕협정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부문의 입장에서 방콕협정 회원국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양허요청을 분석하여 국내 농업에 대한 영향을 계측하고 협상 대책과 국내 농업의 대응방안을 제시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2. 방콕협정의 경제 규모와 역내 교역

2.1. 방콕협정의 개요

방콕협정은 우리나라가 가입하고 있는 유일한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으로서 정식 명칭은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이사회 개발도상회원국간의 무역협상에 관한 1차 협정(First Agreement on Trade Negotiations among Developing Countries of the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이다. 1963년 아시아극동경제위원회(ECAFE) 주최로 열린 제1차 아시아경제협력각료회의는 지역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1970년 12월 카불선언을 통해 ESCAP 내에서 역내 무역 확대 및 경제협력 방안을 강구하기로 합의하였다. 그에 따라 1975년 방콕협정을 체결하고 1976년 6월 협정이 발효되었으며 우리나라는 1976년 5월 18일 협정을 비준하였다.

방콕협정은 WTO의 인정을 받은 개도국간特惠지역무역협정이라는 성격을 지닌다.

“동경라운드 특별대우에 관한 결정 제2항 C”, 일명 권능부여조항(Enabling Clause)에 의해 GATT 제1조 “최혜국대우(Most-Favored Nation Treatment: MFN)” 원칙의 예외로 인정되고 있다. 권능부여조항은 개발도상국간 특정 부문만을 대상으로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세 철폐가 아닌 WTO 양허세율보다 낮은 특혜세율(통상 50% 또는 그 이하)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협정이며 이행기간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어 협정 발효와 동시에 이행하고 있다. 선진국이 개도국의 수출확대와 공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여하는 일반특혜관세제도(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GSP)도 권능부여조항에 의해 허용되고 있다.

방콕협정의 목적은 ESCAP 개발도상회원국간 무역자유화와 교역확대를 통한 회원국들의 경제발전과 국민생활수준 향상이다. 협정 목적인 역내 교역을 확대하고 회원국간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회원국간 특혜관세(Preferred Tariff)를 공여하며 상호간 양허 형식으로 추진되 방글라데시와 라오스 등 최빈개도국(Least Developed Countries: LDC)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특혜관세를 공여하고 있다.

방콕협정의 회원국은 1975년 협정 채택 당시 방글라데시, 인도, 라오스, 한국, 스리랑카, 필리핀, 태국 등 7개국이 서명하였으나 1976년 협정 발효시 태국과 필리핀을 제외한 5개국만이 비준을 받아 회원국이 되었다. 라오스는 자국의 관세 양허안을 통보하지 않아 유효한 회원국은 아니지만 다른 회원국들이 공여하는 특혜관세 혜택을

향유하고 있다. 파푸아뉴기니는 1993년 가입서를 기탁하였으나 국내 비준을 받지 못했으며 1998년에는 파키스탄이 가입의향을 제출하여 현재 가입절차가 진행 중이다. 중국은 2001년 5월 가입하여 2002년 1월부터 협정을 이행하고 있다.

방콕협정에 의한 특혜는 관세를 중심으로 양허되고 있으며 제3라운드를 통해 비관세 장벽과 서비스 분야로 확대될 전망이다. 2001년 중국의 가입을 계기로 양허 폭이 대폭 확대되어 현재 라오스를 제외한 5개 회원국이 모두 1,748개 품목(일반양허 1,636개, 특별양허 112개)을 양허하고 있으며 한국은 256개 품목(일반양허 227개, 특별양허 29개), 중국은 739개 품목을 각각 양허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농산물을 원칙적으로 양허하지 않고 있으나 예외 품목으로 녹차와 커피, 절화류 등 41개를 양허하였다.

방콕협정의 협상방식은 시장개방 요청 및 제공(Request and Offer: R/O) 방식이다. 따라서 회원국간 관심 품목 목록을 양허요청서(Request)로서 상호 교환하여 품목별로 관세 인하 여부와 인하 정도를 협상한 후 양허제공안(Offer List)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2.2. 방콕협정의 경제 규모

방콕협정 회원국들의 전체 GDP는 2001년 기준 약 2조 달러로 NAFTA와 EU 보다 작지만 ASEAN과 MERCOSUR보다는 큰 경제 규모를 지니고 있다. 회원국별로는 중국이 1조 달러로 가장 크고 인도

4,800억 달러, 한국 4,600억 달러로 나타났다. 농림어업 생산액은 약 3,800억 달러로 전체 GDP의 약 19%를 차지하여 다른 지역무역 협정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1인당 GDP는 800 달러로 NAFTA와 EU는 물론 MERCOSUR보다도 훨씬 낮다. 국별로는 한국이 9,700 달러로 가장 높고 중국 800달러, 인도는 465 달러, 방글라데시는 356 달러 등 한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절대빈곤 수준에 있다. 그러나 역내 인구는 약 25억 명으로 세계 전체 인구의 40%를 차지하여 최대의 인구를 가진 지역 무역협정이 되었다. 국별로는 중국이 12억 7천만 명, 인도 10억 2천만 명, 방글라데시의 1억 3천만 명을 비롯하여 현재 가입 절차가 진행 중인 파키스탄의 인구 2억 명을

합하면 약 27억 명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방콕협정의 전체 수출액은 세계 총수출의 7.7%인 4,500억 달러로 MERCOSUR나 ASEAN 보다 높다. 역내 경지면적은 약 326만km²로 전체 면적의 24.3%에 이르지만 거대 인구에 의해 1인당 경지면적은 약 0.13ha에 불과한 낮은 수준에 있다. 농산물 수출액은 중국 131억 달러, 인도 52억 달러, 한국 16억 달러이며 농산물 수출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스리랑카 33%, 인도 11.8%, 라오스 10%, 중국 5.3%로 비교적 높다. 농산물 무역수지는 한국(69억 달러)과 방글라데시(11억 달러)가 적자인 반면 중국(70억 달러)과 인도(12억 달러)는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방콕협정의 회원국들은 거대

표 1 방콕협정의 경제 규모, 2001

구분	한국	중국	인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라오스	합 계
GDP(억 달러) ¹⁾	4,574	1,0160	4,773	460	141	17	20,125
농림어업GDP (억 달러)	199	2,253	1,198	107	27	8	3,792
인구(백만명)	47	1,270	1,025	129	19	5.4	2,495
1인당GDP(달러)	9,700	800	465	356	742	314	800
면적(천km ²)	99.5	9,597	3,287*	144*	66*	237*	13,431
- 농경지(비중%)	18.8(18.9%)	1,300(13.5)	1,806(54.9)	91(63.2)	24(36.4)	18(7.6)	3,258(24.3)
수출(억 달러)	1,504	2,492	439	65	3	3.3	4,506
- 농산물	(15.8)	(131.4)	(52)	(0.7)	(1)	(0.3)	(201)
수입(억 달러)	1,411	2,251	506	86	0.4	5.3	4,260
- 농산물	(84.6)	(61.0)	(40)	(12)	(0.7)	(0.7)	(199)
무역수지(억 달러)	93	241	△67	△21	2.6	△2	246
- 농산물	(△68.8)	(70.4)	(12)	(△11.3)	(0.3)	(△0.4)	(2)
외환보유액(억 달러)	1,028	2,030	510	11	24	1.4*	3,604

주: 1) 구매력기준임. * 2000년 자료임.

자료: 농림부, 『농림업 주요통계』, 2002.

중국인민은행 『통계연보』 2002. 『중국통계연감』, 중국통계출판사, 2001.

UN Statistical Yearbook, 2002.

표 2 주요 지역무역협정의 경제력 비교

	GDP(조 달러)	인구(억명)	1인당 소득(달러)
NAFTA	11.2	4.0	28,000
EU	7.0	3.7	8,000
MERCOSUR	0.9	2.7	4,150
방콕협정	2.0	25.0	800

자료: 통계청, 『OECD 국가의 주요통계지표』 2001.

인구와 넓은 국토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낮아 현재 시장 규모는 작은 편이지만 향후 경제성장이 가속화할 경우 잠재적인 시장 규모는 무한히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세계 최대의 인구대국인 중국과 인도 그리고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까지 가세할 경우 방콕협정의 잠재적 경제력과 성장가능성은 다른 어느 지역무역협정보다도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2.3. 방콕협정의 역내 교역

주요 지역무역 협정별 역내 교역 비중은 1999년 수출을 기준으로 할 때 EU가 63.5%, NAFTA가 54.1%로 높았으며 ASEAN과 MERCOSUR도 20%를 넘었다. 방콕협정은 중국을 포함시켰을 때 8.6%에 불과하여 다른 지역무역협정들에 비해 역

내 교역의존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역내 교역 비중이 낮은 것은 방콕협정 회원국들의 대미 또는 대일 교역의존도가 높은 동시에 협정에 따른 양허 품목 수와 특혜 폭이 낮아 역내 교역이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의 가입을 계기로 진행 중인 제3라운드 협상이 완료되면 역내 교역이 한층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지역주의가 강화되는 세계 경제의 추세에 따라 회원국들이 방콕협정의 중요성과 성장가능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양허를 제공할 경우 역내 교역은 빠르게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방콕협정 회원국 전체의 수출총액은 6,780억 달러였으며 역내 수출액은 총수출액의 8.6%인 582억 달러로 나타났다. 회원

표 3 주요 지역무역협정의 역내 교역비중(수출기준)

구분	1970	1980	1990	1995	1999
EU	59.5	60.8	65.9	62.4	63.5
NAFTA	36.0	33.8	42.6	46.2	54.1
MERCOSUR	9.4	11.6	8.9	20.3	20.3
ASEAN	22.3	17.2	18.9	24.3	22.1
방콕협정	2.7	3.7	3.8	5.1	8.6*

주: * 방콕협정의 역내비중은 중국이 포함된 2000년 자료임.

자료: 손찬현(2002)

UN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 Yearbook』, 2000

WTO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2000』, 2000

국별 역내 수출의존도는 한국이 18.3%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았으며 인도가 6.5%, 중국은 4.5%, 방글라데시 3.4%, 스리랑카 3.2%, 그리고 라오스는 1.6%에 불과한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한국의 방콕협정 역내 수출의존도가 높은 이유는 대중국 수출액이 많기 때문이다. 방콕협정의 경제규모로 볼 때 회원국들의 역내 수출의존도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는 한국 및 중국과의 교역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방콕협정의 역내 교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한국과 중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방콕협정 회원국간 전체 수입 582억 달러에서 중국의 수입 비중은 56.9%인 331억 달러로 역내에서 가장 중요한 시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의 수입도 27.7%인 161억 달러로 비교적 높아 한·중 양국이 방콕협정의 역내 교역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의 방콕협정에 대한 수출은 2002년 361억 달러로 2000년에 비해 46억 달러 늘

어난 반면 전체 수출은 1,625억 달러로 줄어 방콕협정에 대한 수출의존도는 22.2%로 높아졌다. 역내 수입도 205억 달러로 증가하여 방콕협정에 대한 수입의존도 역시 9.5%에서 13.5%로 심화되고 있다.

2002년 한국의 방콕협정 회원국별 수출액은 중국이 339억 달러로 역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3.9%로 높아졌다. 대인도 수출은 13.8억 달러로 2000년에 비해 약간 증가했으나 방글라데시와 스리랑카에 대한 수출은 각각 5.1억 달러와 3억 달러로 감소하였다.

한국의 방콕협정 회원국별 수입액은 중국이 191억 달러로 2000년에 비해 늘었지만 역내 수입총액이 더 크게 증가하여 대중 수입이 역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3.2%로 약간 하락하였다. 인도로부터의 수입은 2000년에 비해 3억 달러 늘어난 13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방글라데시는 2천만 달러, 스리랑카로부터의 수입은 4천만 달러였다.

표 4 방콕협정 회원국간 교역 현황, 2000

단위: 억 달러

수출국 \ 수입국	한국	중국	인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라오스	대회원국 수출총액	수출 총액	비중 (%)
한국	-	292	13	6.3	3.8	0.04	315	1,723	18.3
중국	151	-	29	14	8	0.4	202	4,511	4.5
인도	9	37	-	9	5.5	0.0	61	443	13.6
방글라데시	0.1	1	0.5	-	0.0	0.0	1.6	47	3.4
스리랑카	0.3	0.7	0.6	0.1	-	0.0	1.7	55	3.2
라오스	0.01	0.06	0.0	0.0	0.0	-	0.7	4.4	1.6
소계	161	331	43	29	18	0.5	582	6,778	8.6

자료: IMF,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Yearbook』 2001, Mukherji, I. N.(2003)에서 재인용 및 UN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 Yearbook』 2000, WTO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2000』 2000.

표 5 우리나라의 대방콕협정 교역 추이

단위: 억 달러

구분		중국	인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라오스	대회원국 총계	한국 총계	방콕협정 비중(%)
2000	수출	292	13	6.3	3.8	0.04	315	1,723	18.3
	수입	141	10	0.2	0.6	0.006	152	1,605	9.5
	무역수지	151	3	6.1	3.2	0.034	163	118	138.1
2001	수출	277	14.1	6.5	3.3	0.06	301	1,504	20.0
	수입	145	11	0.3	0.4	0.005	157	1,411	11.1
	무역수지	132	3.1	6.2	2.9	0.055	154	93	165.6
2002	수출	339	13.8	5.1	3.0	0.05	361	1,625	22.2
	수입	191	13	0.2	0.4	0.001	205	1,521	13.5
	무역수지	148	0.8	4.9	2.6	0.049	156	104	150

자료: 통계청(www.kosis.nso.go.kr)

모두 232개 품목이 포함되어 있다.

중국의 양허요청서는 쌀, 대두, 옥수수 등 주요 식량 작물과 고추, 마늘, 양파 등 양념류와 채소류, 쇠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 등 육류, 사과, 배, 감귤, 대추 등 과일류와 가공식품류 등 대부분의 대한 수출농산물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회원국들의 양허요청서에는 임산물과 농용자재 등 농업관련 비농산물도 포함되어 있다.

방콕협정에서 농산물 양허를 제공할 경우 우리나라의 농산물 수입이 역외국에서 역내국으로 전환되어 역내 농산물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이미 우리나라가 방콕협정 회원국에게서 수입하는 농산물의 90%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

3. 방콕협정의 무역전환효과 계측

3.1. 방콕협정 양허요청서 분석

2001년 방콕협정 제3라운드 협상이 시작된 이래 회원국들이 우리나라에 양허를 요청한 품목은 HS-6 단위 기준으로 1,488개이며 국별로는 중국 648개, 인도 382개, 스리랑카 335개, 방글라데시 123개이다. 그 가운데 농산물(1류~24류, 3류 제외)은 중국 122개, 인도 45개(중복 19개), 방글라데시 11개, 스리랑카 96개(중복 23개) 등 모두 274개이며 중복되는 품목을 제외하면

표 6 우리나라에 대한 양허요청 농수산물 품목 수

국별	1류~24류	농업기자재, 식품, 임산물 등	수산물(3류)	농산물 (중복품목)
중국	139	57	17	122
인도	48	30	3	45(19)
스리랑카	97	1	1	96(23)
방글라데시	15	6	4	11
합계	299	94	393	274(42)

주: 국별 양허요청서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라 중국의 양허요청 농산물 122개 품목이 우리나라 농업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80%에 달한다. 따라서 방콕협정 양허로 인한 농산물 수입 증가가 국내 농업 생산에 미치는 충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중국산 농산물의 무역전환효과 계측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3.2. 방콕협정의 무역전환효과 계측: 양국간 잠재교역액(PBT)

무역자유화 또는 특혜관세 양허의 파급효과를 계측하는 방법으로 양국간 잠재교역액(Potential Bilateral Trade: PBT) 개념을 이용할 수 있다. PBT란 양국간 무역자유화 조치로 인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최대 무역액을 의미한다. PBT는 당사국들의 수요와 공급 능력을 완전히 이용한다는 가정 아래 현재 수입국이 제3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량이 모두 상대국으로 전환될 경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입액이다. 따라서 현재 제3국으로부터 수입이 많은 품목의 PBT는 크게 나타나는 반면 비관세장벽 등에 의해 수입이 제한되어 당사국과 제3국으로부터의 수입실적이 적은 품목의 PBT는 실제 수입 증가액보다 낮게 나타날 수 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PBT는 무역전환효과(Trade Diversion Effect)를 실증적으로 계측하는 개념으로 풀이할 수 있다. 품목 i 의 PBT는 수출국의 i 품목 총수출액과 수입국의 i 품목 총수입액 가운데 작은 액수에서 현재 수입국이 수출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액수를 뺀 금액을 의미한다. 따

라서 PBT는 다음과 같은 공식에 의해 계측할 수 있다:

$$PBT_i = \min (AX_i, BM_i) - ABM_i$$

단, AX_i 는 수출국 A의 i 품목 총수출액, BM_i 는 수입국 B의 i 품목 총수입액, ABM_i 는 A국이 B국으로 현재 수출하는 금액이다.

우리나라와 방콕협정 회원국들간의 농산물 교역 규모는 <표 7>과 같이 중국과 연평균 약 16억 달러로 금액이 큰 반면 인도와는 연평균 1.8억 달러, 방글라데시 약 3백만 달러, 스리랑카 13백만 달러로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이 연구에서는 중국과의 농산물 잠재교역액(PBT)을 계측하였다.

중국이 양허를 요청한 HS-6 단위 기준 122개 품목의 PBT는 2002년 기준 15억 8천만 달러로 나타났다(부표 참조). 이는 수산물인 제3류를 제외한 제1류부터 제24류까지의 품목 가운데 중국이 관심품목으로 지정한 122개 품목의 수입전환효과를 나타낸다. 향후 방콕협정에서 이들 품목을 모두 양허할 경우 현재 우리나라가 제3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물량이 전량 중국으로 수입선을 전환할 경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입액이다.¹

¹ Mukherji(2003)의 계측 결과 우리나라의 농산물(제1부~제4부) PBT는 중국 19억 달러, 인도 12.2억 달러, 스리랑카 1.5억 달러, 방글라데시 8천만 달러 등 모두 33억 8천만 달러였으며 이 금액은 수산물(제3류)과 중국의 양허요청 품목 122개 외에 나머지 농산물도 모두 포함하고 있다.

표 7 우리나라의 대방콕협정 농림축산물 교역 현황

단위: 천 달러

국가별	연도	수출입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합계
중국	2000	수출	58,964	3,134	56,062	118,160
		수입	1,152,039	23,411	282,634	1,458,084
		무역수지	-1,093,075	-20,277	-226,572	-1,339,924
	2001	수출	68,395	3,817	37,300	109,512
		수입	846,089	32,256	338,503	1,216,848
		무역수지	-777,694	-28,439	-301,203	-1,107,336
	2002	수출	95,633	3,070	32,628	131,331
		수입	1,269,175	43,004	492,073	1,804,252
		무역수지	1,173,542	-39,934	-459,445	-1,672,921
인도	2000	수출	4,137	90	15	4,242
		수입	124,854	1,143	8,902	134,899
		무역수지	-120,717	-1,053	-8,887	-130,657
	2001	수출	4,260	148	19	4,427
		수입	166,934	2,600	7,690	177,224
		무역수지	-162,674	-2,452	-7,671	-172,797
	2002	수출	5,268	95	56	5,419
		수입	190,494	3,242	9,385	203,121
		무역수지	-185,226	-3,147	-9,329	-197,702
방글라데시	2000	수출	3,512	18	170	3,700
		수입	-	16	15	31
		무역수지	3,512	2	155	3,669
	2001	수출	2,994	63	161	3,218
		수입	5	-	192	197
		무역수지	2,989	63	-31	3,021
	2002	수출	2,912	331	170	3,413
		수입	31	29	26	86
		무역수지	2,881	302	144	3,327
스리랑카	2000	수출	276	38	-	314
		수입	11,909	-	37	11,946
		무역수지	-11,633	38	-37	-11,632
	2001	수출	339	-	3	342
		수입	12,036	-	29	12,065
		무역수지	-11,697	-	-26	-11,723
	2002	수출	339	1	19	359
		수입	14,438	-	21	14,459
		무역수지	-14,099	1	-2	-14,100

자료: 농수산물 유통공사 홈페이지, <http://www.kati.net>

품목별 PBT는 2002년 기준 옥수수 3억 4천 5백만 달러, 음료베이스 2억 5천만 달러, 갑각류 조제품이 6천만 달러로 추정되었다. 그 밖에 동물의 위 등 내장과 감초 돼지고기와 냉동닭고기가 각각 1억 8천만 달러와 9천 3백만 달러, 대두가 7천만 달러, 각각 3천만 달러로 계

측되었다.

그러나 분석 결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액수와는 달리 쌀(현미 포함) 수입 증가액은 2백만 달러에 불과하였다. 우리나라는 UR 협상에서 쌀의 관세화 이행을 10년간 유예하도록 허용받아 최소시장접근(MMA) 물량을 초과하는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중국은 물론 제3국으로부터의 쌀 수입량이 인위적으로 규제되고 있기 때문에 PBT 계측 공식에 의해 추정된 수입 증가량은 실제로 가능한 수입증가량보다 낮게 나타난 탓이다.

만일 우리나라가 방콕협정에서 쌀을 양허할 경우 중국산 쌀 수입액은 계측된 PBT 보다 크게 증가하여 농산물 전체 수입액도 앞에서 추정한 금액보다 훨씬 커질 것으로 보인다. 쌀은 이미 2004년에 관세화 유예와 관련된 재협상을 진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WTO/DDA 협상에서도 관세인하 방식과 인하 폭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분위기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는 방콕협정 제3라운드에서 쌀을 양허 대상으로 포함시키기 어려운 입장이다.

4. 맺음말: 방콕협정 제3라운드 협상전략

방콕협정은 GATT 24조에 의해 예외로 인정받는 자유무역협정(FTA)과 달리 “양허대상 품목”의 범위에 특별한 제약이 없으며 특혜 폭에 대해서도 신축성이 있다.

따라서 FTA처럼 “실질적으로 모든 품목에 대한 관세를 합리적 기간 내에 철폐”하지 않아도 되는 FTA 전(前)단계로 간주할 수 있다.

우리나라와 인도, 방글라데시와 스리랑카, 라오스의 5개국으로 이루어진 방콕협정은 2001년 중국의 가입을 계기로 협정의 활성화를 위해 특혜관세 양허 품목과 특혜폭을 확대하기 위해 제3라운드 협상을 시작하였다. 우리나라는 중국 시장에서의 경쟁력 우위 확보와 인도, 방글라데시 등 거대 인구 국가들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하여 양허를 확대함으로써 방콕협정에서의 기득권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방콕협정은 WTO/DDA 농업협상에서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근거(방콕협정의 정식명칭: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이사회(ESCAP) 개발도상회원국간 무역협상에 관한 1차 협정)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가 있다. 아울러 실질적으로 모든 분야의 관세를 철폐해야 하는 부담이 있는 FTA 추진에 앞서 제한적인 분야만 탄력적으로 특혜관세를 부과함으로써 본격적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앞서 무역자유화에 적응하는 단계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방콕협정은 중국이 가입함에 따라 사실상 “한·중 FTA”의 중간 단계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따라서 농업산물에 대한 특혜관세 양허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한·중간 농업부문의 산업내 무역 가능성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분석되어 방콕협정 특혜 양허시 중국

산 농산물이 한국시장을 급속하게 잠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콕협정의 특혜관세 양허에 따른 무역 전환효과(Trade Diversion Effects)를 실증적으로 나타내는 PBT를 계측한 결과 중국의 농산물 관심품목 122개의 수입 증가 가능성이 현행 중국산 농축산물 수입액보다도 더 많을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현재 최소시장접근(MMA) 물량만을 수입하고 있는 쌀이 양허 대상에 포함될 경우 방콕협정에 의한 중국산 농산물 수입액은 급격하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방콕협정 제3라운드에서도 과거와 마찬가지로 농산물을 양허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

특히 WTO/DDA 협상이 타결되어 MFN 세율 자체가 낮아질 경우 방콕협정 세율을 추가적으로 인하해야 하는 부담이 있을 수 있으므로 농산물은 원칙적으로 양허대상에서 제외되되 불가피한 경우 WTO/DDA 협상이 타결된 이후에 재검토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른 회원국들의 양허품목과 특혜 폭 등 양허 내용에 따라, 그리고 방콕협정의 창설회원국으로서 역내 회원국들 가운데 가장 소득이 높은 국가로서의 위상을 감안하여 부득이 농산물을 양허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없는 경우 내부적으로 방콕협정 양허 우선순위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농산물 품목별 양허 우선순위 설정시 고려할 사항으로 먼저 현행 실행관세율을 들 수 있다. 현재의 실행세율이 아주 낮아 사실상 수입 억제 효과가 거의 없는 품목의

경우 품질이나 외형과 같은 비가격경쟁력과 국내 생산 여건 및 중국을 포함한 수출국의 가격 및 품질경쟁력 등을 비교, 검토한 후 우선 양허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양허세율은 높지만 국내 관련 산업, 주로 가공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할당관세 등에 의해 실행관세를 낮추어 왔던 품목들도 우선 양허대상 품목에 포함시킬 수 있다.

둘째, 사실상 국내 생산이 유명무실해서 거의 완전히 수입에 의존하는 품목을 선정할 수 있다. 곡물류 가운데 국내 생산기반이 거의 붕괴된 품목들은 사실상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방콕협정에서 양허할 경우 무역전환효과에 의해 수입선이 역외국에서 역내국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역외국의 반발에 따른 통상마찰을 고려하여 점진적인 양허 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셋째, 수출경쟁력을 확보한 품목들은 과감하게 양허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다만 수입품들에 대한 위생 및 검역과 안전성 문제 등 정당한 규제는 더욱 엄격하게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쟁국에 비해 국내생산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는 각종 내국세나 비용 부담 등 규제 완화가 선행되어야 하며 금융제도와 인허가 등 행정적 절차도 효율화시킬 필요가 있다. 현재 수출이 가능한 일부 가공농산물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방콕협정의 양허대상에서 제외된 품목들에 대한 보호가 언제까지나 가능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적극적인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양허 대상으로 포함되는 품목의 생산자들에 대해서는 각종 프로그램에 따라 작목전환과 전업을 지원하거나 휴경 보조금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러한 경쟁력 강화나 보조금 지급 등 정책과 조치들이 너무 일시적이거나 단기적인 요인에 의해 좌우되지 않도록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아울러 이들 정책은 농업생산자들이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예측 가능하고 투명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대유. 2002. “방콕협정 제3라운드 협상 경위 및 향후 대응방안.” 한국무역협회 주최 세미나(방콕협정 제3라운드에 대한 우리의 대응) 발표 자료.
- 김장한. 2002. “최근 FTA 논의가 방콕협정에 주는 시사점.” 한국무역협회 주최 세미나(방콕협정 제3라운드에 대한 우리의 대응) 발표자료.
- 박정동. 2002. “아세안과 중국: 경합과 상호보완.” 한국무역협회 주최 세미나(방콕협정 제3라운드에 대한 우리의 대응) 발표 자료.
- 손찬현. 2002. “방콕협정: 개요와 정책과제.” 한국무역협회 주최 세미나(방콕협정 제3라운드에 대한 우리의 대응) 발표 자료.
- 송희영 등. 2003. 『방콕협정의 경제적 효과분석 및 제3라운드 협상 대응전략 연구』. 건국대학교 부설 경제경영연구소.
- Mukherji, I. N. 2003. *The Bangkok Agreement: A Negative List Approach to Trade Liberalization in Asia and the Pacific*, ESCAP, Bangkok.
- UNCTAD. 2001. *Trade Analysis and Information System(TRAINS)*, UN.
- UN. 2000.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 Yearbook*, UN.
- WTO. 2000.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2000*, WTO.

■ 원고접수일 : 2004년 5월 29일
원고심사일 : 2004년 6월 2일
심사완료일 : 2004년 6월 16일

부 록

부표 우리나라의 대중국 농산물 잠재수입액(PBT)

단위: 천 달러

순번	HS code	품명	2000년	2001년	2002년
1	020230	냉동 쇠고기	23,136	31,168	16,592
2	020329	돼지고기(냉동/삼겹살)	58,880	123,893	183,337
3	020712	냉동닭고기	177	24	123
4	020713	냉장닭고기	0.2	0	7,330
5	020714	냉동닭고기(절단육)	56,476	81,192	92,764
6	020736	냉동오리, 거위고기	4,295	2,962	1,317
7	020810	토끼	-	-	-
8	040110	밀크, 크림(지방분1/100이하)	-	-	-
9	040120	" " 초과)	-	0.4	1
10	040130	" " 6/100초과)	21	9	0
11	040700	조란	369	298	294
12	041000	동물성 식용기름	741	573	666
13	050400	동물의 장, 방광, 위	21,385	22,945	34,408
14	050510	새의 솜털, 깃털	6,017	3,957	5,493
15	070310	양파, 쪽파	440	22	105
16	070320	마늘	1	0	30
17	070410	양배추, 브로콜리	49	11	61
18	070610	당근, 순무	528	994	289
19	070690	무, 고추냉이 등	65	68	20
20	070951	아카리쿠스속 버섯(냉장)	52	46	72
21	070990	기타 버섯류(냉장)	438	834	1,263
22	071029	기타 채두류(냉동)	202	290	309
23	071030	시금치류(냉동)	7	0.9	1
24	071080	기타 채소류(냉동 마늘 등)	1,204	1,228	1,210
25	071090	채소류 혼합물(냉동)	470	514	680
26	071140	오이류(일시 저장처리)	312	823	1,329
27	071151	아카리쿠스속의 버섯(")	-	-	-
28	071159	기타 버섯, 송로(")	-	-	-
29	071190	기타 채소, 채소혼합물(")	18	47	38
30	071231	아카리쿠스속 버섯(건조 채소)	-	-	393
31	071232	목이버섯(건조 채소)	-	-	-
32	071290	건조고사리 등	2,371	2,020	2,361
33	071331	건조 녹두	165	93	12
34	071332	건조 팥	5	2	-
35	071333	건조 강낭콩	2,689	2,329	2,802
36	071350	건조 참두	-	-	-
37	071490	참깨, 고구마 등 기타	18	2	7

단위: 천 달러

순번	HS code	품명	2000년	2001년	2002년
38	080232	호도(탈각)	3,995	4,529	5,590
39	080240	밤(탈각)	0.2	168	276
40	080290	기타 견과류	652	658	996
41	080520	맨더린(신선, 건조)	420	78	62
42	080810	사과(신선, 건조)	8	135	11
43	080820	배 및 마르델로(신선, 건조)	28	105	64
44	081110	딸기(냉동)	552	1,205	153
45	081190	냉동견과류 등	782	979	1,581
46	081290	기타 일시저장 과실	-	-	-
47	081340	기타 건조과실	11	44	49
48	090210	발효하지 않는 녹차	30	70	46
49	090220	기타 발효하지 않는 녹차	54	49	70
50	090230	홍차(발효) 및 반발효차	955	684	875
51	090240	기타 홍차(발효) 및 반발효차	424	394	387
52	090420	건고추(가루)	411	381	518
53	091010	생강	55	58	30
54	100190	기타 밀과 메슬린	216	8,243	7,838
55	100590	옥수수	271,410	325,843	344,895
56	100620	현미	3,358	248	2,126
57	110812	옥수수 전분	157	149	94
58	110819	고구마 전분	177	843	301
59	120100	대두	55,554	68,652	68,376
60	120210	탈각 않은 낙화생	-	0	-
61	120220	탈각한 낙화생	0.1	3	0.1
62	120600	해바라기 씨	849	817	1,057
63	120740	참깨	26,513	33,138	10,371
64	120799	기타 채유종자(들깨 등)	-	111	1,153
65	120810	채유용 대두	474	169	354
66	120890	기타 채유용 대두	-	-	-
67	121190	부자 등 한약재	10,495	7,053	7,452
68	121220	해조류, 기타 조류	7,880	6,911	7,835
69	150810	조유	-	-	-
70	150890	기타 낙화생유	14	19	8
71	151499	기타 유채유	-	-	6
72	151590	기타 비취발성 식물성유지	5,106	5,367	6,850
73	160100	소시지 등	6,925	8,958	10,467
74	160210	균질화 조제품(조제, 저장처리)	-	-	13
75	160220	동물간장(조제, 저장처리)	98	36	16
76	160231	칠면조 간장	-	-	-
77	160232	닭 간장	4,973	10,389	8,179
78	160239	기타 가금류의 것	449	444	391
79	160419	기타 저장처리 어류	16,458	26,066	31,943

단위: 천 달러

순번	HS code	품명	2000년	2001년	2002년
80	160520	새우(조제, 저장처리)	18,688	21,761	22,282
81	160590	기타 갑각류(조제, 저장처리)	55,477	47,554	57,377
82	170191	사탕수수 등(향미, 착색제 첨가)	70	33	40
83	170199	기타 설탕류	452	487	674
84	170490	감초엑스, 드롭스 등	23,832	28,798	31,454
85	190219	당면, 냉면 등	13,103	15,588	19,231
86	190230	라면 등	720	998	1,115
87	190410	콘플레이크	2,401	1,099	2,727
88	200190	기타채소, 과일(식초조제, 저장)	1,182	1,524	1,507
89	200290	기타 토마토(조제품)	13,834	12,332	11,193
90	200310	아가리쿠스속의 버섯(")	251	175	356
91	200490	기타 채소 (식초조제, 저장)	299	189	147
92	200600	채소, 과일 등(설탕조제, 저장)	964	842	1,085
93	200811	낙화생 조제품	2,826	2,464	2,203
94	200819	밤 조제품	2,121	3,076	4,567
95	200820	파인애플(조제, 저장처리)	7,148	7,703	8,826
96	200830	감귤류(")	275	167	617
97	200870	복숭아(")	4,397	4,638	5,673
98	200899	기타 혼합물(")	6,946	9,024	12,514
99	200971	사과쥬스	-	-	-
100	200979	기타 사과쥬스	-	-	-
101	200980	기타 과일쥬스	19,061	15,632	13,170
102	210112	인스턴트 커피 등	6,822	6,730	9,557
103	210120	차 또는 마태의 농축물	7,064	7,269	5,931
104	210390	장류	22,766	23,577	24,518
105	210690	기타 조제식료품 등	175,339	203,457	250,040
106	220300	맥주	4,695	11,218	12,147
107	220600	기타 발효주	623	1,775	2,220
108	220710	변성않은 에틸알콜	20,595	24,218	29,232
109	220820	포도주	-	0.6	-
110	220830	위스키류	1,132	35	570
111	220840	럼 및 태피아	436	0.1	204
112	220850	진 및 제네바	-	-	4
113	220860	보드카	-	-	-
114	220870	리큐르류 및 코디얼	910	964	612
115	220890	소주, 고량주 등	1,280	971	1,536
116	230320	전분박과 유사 박류	10,092	3,810	1,464
117	230610	깻묵 등	131	875	130
118	230641	저 에쿠르산 유채	-	-	-
119	230649	기타 고형의 유박	-	-	-
120	230800	사료용 식물성 물질 등	-	-	2,357
121	240220	권련(담배 함유)	125,392	173,139	204,463
122	240310	흡연용 담배	6	16	6,469
합계			1,123,055	1,388,376	1,577,245